

II. 어장 · 어항 · 어촌의 역할

△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잘 맞는 수산물의 안정공급

- ① 해양생물자원을 기르는 장(육성장)
- ② 자원관리형어업 · 기르는 어업의 기지로서의 역할
 - 종묘생산이나 중간육성 등, 치어육성의 장
 - 단속선의 기지, 어장의 관리 · 감시등 자원관리의 장
- ③ 생산활동의 지지로서의 역할
 - 어획물의 양륙장
 - 출어준비의 장(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어선원의 휴양 등)
 - 어업자의 주요한 재산인 어선의 안전한 정박의 장
- ④ 유통가공의 기지로서의 역할
 - 하역 및 시장 거래
 - 소비지로 출하하는 터미널
 - 활어유통 터미널
 - 수산가공업의 기지

△ 지역사회의 핵으로서의 역할

- ① 어촌주민의 생활기반
- ② 어업 관련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
- ③ 도거나 벽지에 있어서 어촌과 외부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 ④ 어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

△ 국민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가공간의 제공

- ① 자연체험형 여가공간
- ②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활동 거점
- ③ 바다의 문화 계승의 장
- ④ 바다의 체험학습의 장

△ 어촌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의 보호

- ① 쓰나미나 높은 파도로부터 취약 생활공간 보호
- ② 긴급시의 물자를 싣고 내리는 거점

△ 연안역의 관리 거점으로서의 역할

- ① 국토 · 자연환경 보전에 공헌
- ② 불법조업 · 밀입국의 조기발견, 정보 전달

③ 태풍 등 기상 재해 시 선박의 피난의 장

④ 재해 대책 상의 역할

⑤ 연안역이 지니는 다면적 기능의 보전

III. 연안의장 정비의 법제도

(어항어장정비법)

△ 「어항법의 일부개정」(2001. 6.29)의 주요 포인트

제 1. 제명 및 목적의 개정

1. 제명의 개정

제1에서 제4까지의 개정에 수반하여, 제명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

2. 목적의 개정

제2에서 제 4까지의 개정에 수반하여, 목적규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한다.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 및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의 진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 규정에 명기한다.

제 2. 어항 및 어장의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정비

1. 정의 규정의 개정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어항정비 사업과 어장정비 개발사업을 하나로 하여 「어항어장 정비사업」으로 자리매김 한다.

2. 어항어장 정비 기본방침

1)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향, 어항어장정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3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작성되며, 제3의 1의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은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한다.

3.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

- 1)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실시에 도움이 되게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에 따라 어항어장 정비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고 한다.)의 안을 작성하여,각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 2) 장기계획은 일본 수산업의 기반정비에 있어서의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관점에서, 계획기간에 관한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실시의 목표 및 사업량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장기계획 안의 작성은 관계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의 공동작성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한다.

제 3. 지방 공공단체 등에 의한 주체적인 사업의 실시

1.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

지방공공단체 등이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어항어장 정비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특정 어항어장 정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내각이 정하여, 국회승인을 받은 어항의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이 어항 수축 계획을 작성할 것이 의무적이었고, 지방공공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었다.

2. 국가가 정하는 기준의 철폐

구법에는 지방공공단체 등은 국가가 작성한 어항 시설의 규모, 배치 및 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 한다.

제4.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

1. 심의회의 공개

심의회의 장기계획과 기본방침에 관한 심의는 공개하기로 하고 이들 심의에 사용된 자료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2. 기본방침, 장기계획 및 사업계획의 공표

기본방침, 장기계획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할 때의 관계지방 공공단체 등과의 협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는 변경코자 할 때는 관계 지방공공단체 및 관계 어항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계획의 안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사업계획의 안은 20일간 공공열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계획의 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에 관한 수속의 정비

- 1)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폐지, 또는 정지코자 할 때는 관계 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2)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폐지, 또는 정지한 때는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IV. 어항시설의 분류와 시설 설명

△ 기본시설

-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돌제, 수문, 갑문, 제방 및 홍벽
- 계류시설 - 안벽, 물양장, 잔교, 계선부표, 계선말뚝, 부표교 및 선양장
- 수역시설 - 항로 및 박지

△ 기능시설

- 운송시설 - 철도, 도로, 주차장, 교량, 운하 및

헬리포트

- 항행 보조시설 - 항로표식 및 어선의 입출항을 위한 신호시설 및 조명시설
- 어항시설용지 - 각종 어항시설의 부지
- 어선어구 보전 시설 - 어선 보관시설, 어선 수리장 및 어구 보관수리시설
- 증식 및 양식용 시설 - 수산종묘 생산시설, 양식용 사료보관 조정시설, 양식용 작업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
- 어획물의 처리 보장 및 가공시설 - 하역소, 하역기계, 축양시설, 수산창고, 야적장, 제빙, 냉동과 냉장시설 및 가공장
- 어업용 통신시설 - 육상무선전신, 육상무선전화 및 기상신호소
- 어항후생시설 - 어항관계자의 숙박소, 목욕탕, 진료소 및 기타의 복리후생시설
- 어항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항관리용 자재창고, 선박 보관시설 기타의 어항 관리를 위한 시설
- 어항정화시설 - 공해 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기타의 정화시설
- 폐유처리시설 - 어선내에서 발생한 폐유의 처리를 위한 시설
- 폐선처리시설 - 어선의 파쇄 기타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어항환경정비시설 - 광장, 식재, 휴게소, 기타의 어항 환경의 정비를 위한 시설

■ 어장의 분류

(1) 어초어장

주로 어류의 운집, 발생 및 성육이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생산성이 높은 인공어장, 내구성 구조물(콘크리트 블록 등)의 설치에 의하여 정비되는 어장

(2) 증식장

해역과 이에 인접하는 육지에 있어서 유용 수산생물의 발생과 성육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

하는 착정기질의 설치(투석, 콘크리트 블록 등의 설치와 간석(간석 및 구획 시설)의 조성), 소파시설 등(소파제, 잠제, 이안제 및 방빙제)의 설치, 해수교류시설(도류제, 수로 등)의 설치, 중간육성시설의 설치 및 용지(중간육성 시설설치용, 작업로 등)의 조성과 이에 관련하는 시설(펌프, 휴식공간 등 간단한 부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정비되는 어장

(3)양식장

해역과 이에 인접하는 육지 중, 미이용 상태에 있는 양식 적지에 생산성이 높은 양식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소파시설 등(소파제, 잠제, 부소파제 및 방빙제)의 설치, 구획시설의 설치, 해수교류시설(도류제, 수문, 수로, 도수터널 등)의 설치, 저질개선(수로파기, 준설, 객토, 경운 등) 및 용지(양식시설용)의 조정과 이에 관련하는 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정비되는 어장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

■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의 개요

1) 취지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은 수산업의 발본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어장·어항·어촌의 정비를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의 목적이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책정(2002년 3월 26일 각의결정)하고 있다.

2)내용

① 계획기간 :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② 실시의 목표

어항어장 정비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대처한다.

i.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정비

ii.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등의 적극적

인 보전 · 창조

iii. 수산업의 진흥을 핵으로 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형성을 지향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이상의 대처를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략 10년후를 목표로

-1975년이후(200해리도입시)의 어장환경이나 연안 어업의 생산을 염두에 두고 어항어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역의 어장환경의 회복과 어업생산량의 증산(37만톤)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유통의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어업집락배수처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있는 어촌의 처리 인구비율을 소도시정도로 할 것을 목표로 어

항 · 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생활환경 · 작업환경의 개선을 시도한다.

③사업량

계획기간(5개년)의 사업량은 정비하는 대상을 중점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 i.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할 거점 중대략 750지구, 생산유통의 효율화와 품질 · 위생관리의 강화를 시도할 거점 중 대략 350지구를 정비
- ii. 대략 5천ha의 조장 · 간석의 조성에 상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새로이 보전 · 창조
- iii.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대략 430지구에서 실시

일본 수산 관련 단체 재편 현황

